

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자.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지정취소	
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지정취소	

고 시

● 환경부고시제2020-137호

자연발생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

자연발생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마목 중 “구성된 「자연발생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을 “구성된 「자연발생식면영향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3호나목 중 “토지에 붙어 있는”을 “토양, 암석 등에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이란”을 ““활동근거시료채취법 [Activity Based Sampling: ABS(이하“ABS”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2장제1호나목4) 중 “암종”을 “암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는다.”를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로 하며, 같은 목 1) 중 “검증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증을 통해 조사”를 “검토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검증위원회에서는”을 “검토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장 제2호 중 “검증위원회에서”를 “검토위원회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황조사 방법

제2장제2호가목3)나) 및 사) 중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을 각각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를 “분야별 조사”로 하며, 같은 목 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석면함유가능 암석의 종류와 암석에 포함된 석면은 편광현미경법(PLM)을 이용하여 정성으로 분석한다. 제2장제2호나목1)라) 단서 중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EPMA)”을 “투과전자현미경법(TEM), X선회절기법(XRD)”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단서 중 “제2010-104호”를 “제2020-45호”로 하며, 같은 2) 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면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14조에 따른 편광현미경법(PLM)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2장제2호나목2)마) 단서 중 “투과전자현미경법, 주사현미경법, X-선회절분석법, 전자현미경법”을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투과전자현미경법, 제15조에 따른 X선회절기법”으로 하고, 같은 목 3)가) 및 다)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물”로 하며, 같은 3)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먹는물 시료의 석면 함유량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16조에 따른 투과전자현미경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2장제2호나목4)가)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을 “석면측정용 현미경법(ES 01608)”으로 하고, 같은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기질 시료는 원칙적으로 시료채취지점의 지상 1.5 m되는 위치에서 10 L/min의 흡인 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제2장제2호나목4)나) 중 “시료의 분석은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제1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 등록 업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를 “시료는”으로 하고, 같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지점 : 주민들의 이동 동선 및 노출 예상지점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총 채취 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채취지점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및 기압 등에 대한 기상 정보를 함께 측정하며, 연평균 풍향을 고려하여 풍하측에서 측정한다.
- (2) 시점 : 시료 채취 시점은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이 실시되기 3일 전부터 활동근거시료 채취법(ABS) 종료 후 3일까지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 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 (3)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장제2호나목5)가) 중 “다음 각호가 포함된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을 “활동근거시료채취법”으로 하고, 같은 가) (1)부터 (5)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5)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체위해성평가의 실내공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지점 : 석면 오염원(석면 광산 등)을 중심으로 일정 간격으로 정한다. 총 측정 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2)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인체위해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 집단의 선정 : 대상 집단은 지질도를 근거로 하여 예비조사에서 석면의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서 선정한다.
- (2) 설문조사 : 설문지를 이용하여 거주력, 연령, 직업군, 성별, 활동패턴 등의 특성을 조사한다. 대상 집단의 활동에 따라 근무시간, 여가시간, 거주시간 등을 조사한다.
- (3) 노출시나리오 설정 :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에 맞는 노출시나리오를 적용한다. 대표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동활동(도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운행 등)
 - 농업활동(예초기, 흙파기, 김매기 등)
 - 여가활동(마당쓸기, 운동, 산책 등)
 - 교육활동(어린이집, 초중고 운동장 사용 등)
 - 기타 석면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활동
- (4) 활동근거시료채취(ABS) 방법 : 활동근거시료채취의 석면 농도 측정은 개인모니터링 방법(Personal Sampling)으로 한다.

- 개인모니터링 방법은 대상 집단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호흡기 반구 30cm 이내)하며,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가능한 활동일 경우 성인, 어린이의 호흡위치에 기구를 장착하며 동시에 측정한다. 개인모니터링 방법은 5~10 L/min의 유량으로 채취하되, 최소 400L 이상 4,000L 미만으로 채취한다.

-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의 시료채취는 각 시나리오별 6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료채취시 타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의 간섭 및 영향을 받는 동일 시간대 활동은 배제하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라) 위해도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최종 확인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제2장제2호다목 중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본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의 타당성과 상세 석면분포도 축척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검토위원회의 검토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토위원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제3장제1호가목 중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